

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3호 2002. 1. 21)

총무위원회
2002. 2. 4(월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2. 1. 21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1. 1. 21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1. 2. 2 사천시의회 제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요지(사회과장 강대평)

가. 제안이유

-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(2001. 5. 24 법률 제6474호)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(1) “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”를 “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”로 그 제명을 변경함
- (2) “의료보호법 제3조”를 “의료급여법 제6조제6항”으로 함(안 제1조)
- (3) 위원장을 현행 “부시장”에서 “시장”으로 변경함(안 제2조제2항)
- (4)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“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하고, “부당이익금 등의 결손처분” 사항을 추가함(안 제3조)
- (5) “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”를 삭제함(안 제6조제3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- 본 개정조례(안)은 2001. 5. 24. 자로 종전의 의료 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므로 종전의 조례를 개정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6조에 시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고,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: 없음